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8.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8. 31. 조영덕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2021. 8. 31.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1. 9. 8.)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채우진 의원】

가. 제안이유

마포구 관광자원의 홍보를 위해 제작되는 관광 홍보 기념품을 축제 등 행사 참여자, 관광객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기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광자원 홍보 기념품 지급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문 개정(안 제7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개정안은 2021년 8월 31일 채우진 의원 외 4명의 제안으로 발의 되어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안 발의의 주요

목적은 살펴보면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되는 관광 홍보물을 각종 축제나 행사 참여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현대 관광산업의 특징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련 조문의 뜻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정 조문을 살펴보면 제5조의 2에 ‘관광 홍보 기념품 제공’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제5조에 규정된 관광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각종 지원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문 제7조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조문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난개발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생태친화형 관광산업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 이를 개정안대로 수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이와 같이 살펴볼 때, 동 조례의 개정은 최근 코로나 19로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마포구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관광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경제와 상생발전<sup>8)</sup>할 수 있는 마포구 관광정책의 입안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8)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참고자료】**

#### ○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